



2018년 제1차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회의 결과보고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8년 제1차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 결과보고

- 제3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 2018년도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 및 예산(안), 2018년도 실무분과 민과협력 공동사업 검토, 운영세칙 개정(안) 검토를 위한 「2018년 제1차 대표협의체 회의」결과 보고임.

개 요

- 일 시 : 2018. 02. 27.(화), 14:00
- 장 소 : 시청 소회의실(본관 지하1층)
- 참석인원 : 총 46명
 - ▶ 대표협의체 위원 : 37명중 25명 참석 (67.6%)
 - 참석위원 : 25명
이귀선, 윤학수, 김은수, 양진하, 김명옥, 김민수, 김병국, 김복희, 김운곤, 김형인, 박은순, 박종아, 박효숙, 신재권, 양만호, 오현재, 이경아, 이종문, 이종성, 이현상, 조병호, 하경희, 신화균, 김혜경, 황재경. 이상.
 - 미참석위원 : 12명
염태영, 김진수, 민소영, 심은자, 안병은, 연구철, 유인숙, 유혜영, 이대회, 임숙자, 정선영, 한경희. 이상.
 - ▶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사업부서 : 22명
 - ▶ 복지허브화추진단 : 박미숙, 김수정, 김남화, 박대권 4명
 - ▶ 협의체사무국 : 박창재, 임복희, 허운범, 이주미, 김기강 5명

주요내용

1. 보고사항

- 2017년 운영 실적 및 결산 보고
- 2018년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2017년 우수활동 실무분과 선정 결과 및 2018년 선정 기준
- 2018년도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보고
-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일정 공유
- 위원변동 사항 등

2. 안전심의

- 제3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결과 평가(안)
- 2018년도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계획 및 예산(안)
- 운영세칙 개정(안)_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감사 선임 관련

회의결과

I. 안건토의

① 제3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결과 평가(안)

○ 회의결과 : 원안대로 심의

○ 주요내용

- 추진사업 : 5대 분야별 추진전략, 11대 중점추진사업, 74개 세부사업

<단위 : 개/천원>

구 분	2017년 최종 심의계획 (A)	2017년 실적(B)	증감(B-A)	달성률 (B/A*100)
사업건수	74	74	0	100%
사업예산	76,411,045	77,681,583	1,270,538	101.7%

평가부문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항목별 배점)	평가점수	
			평가결과	소계
지역사회보장 계획내용의 충실성 (25점)	·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4	4	25
	· 계획수립의 합리성	7	7	
	· 지역사업 선정의 객관성	8	8	
	· 행·재정 지원 계획의 충실성	6	6	
시행과정의 적정성 (25점)	·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운영의 적정성	4	4	25
	· 시행결과 평가체계 구성·운영의 적정성	4	4	
	· 시행계획의 변경 내용 및 절차의 적정성	4	4	
	· 사업 시행과정의 민관협력 체계 구축	7	7	
	· 사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의 적정성	6	6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30점)	· 성과목표치(목표수준) 설정의 적정성	5	5	26
	· 성과목표치(목표수준) 달성도	6	4	
	· 계획대비 예산 집행률	5	3	
	· 지역사업 성과의 우수성	8	8	
	· 행·재정 계획 대비 이행 정도	6	6	
지역주민의 참여도 (20점)	· 계획수립·평가과정의 지역주민 참여도	7	7	20
	· 계획 시행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노력 및 반영 정도	7	7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참여도	6	6	
		100	96	96

○ 논의내용 :

이름	내용
조병호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 지사장)	○ 제안설명을 할 때 달성률 등이 높거나 낮은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이 필요
하경희 (아주대학교 교수)	○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와 성취율이 높는데 점수가 낮아진 것이 목표 달성률이 낮음. 70% 이하인게 총 6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별첨 자료의 46페이지를 보면 하나의 표로 전체적으로 결과가 나와 있음. 2018년도에 변화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2018년도 중간 변경시 반영해야 할 것임. 5-4 목표달성도가 낮음. 135쪽을 보면 거기에는 목표 달성률이 109%로 나와 있어서 어떤것인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함.
임복희 (협의체 팀장)	○ 7월 중간모니터링을 하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변경하고 있는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인데 변경되어 기입됨. 135페이지가 오류작성임. 47%달성이 맞음

이 름	내 용
김명옥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 사회적기업 및 자활참여자수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들의 경우 수원시 최저 임금 기준 등을 충족하는 일자리인지 내용에 대해 궁금함.
고정화 (지속가능과 사회경제팀 주무관)	○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해 주는 기업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해준 기업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최저임금까지 충족하는 일자리는 아님
김명옥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 자활사업은 충족하고 있는가
심영무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 주무관)	○ 자활의 경우 자활센터 3개소에서 진행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자활참여자수이며 임금은 2018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 다양한 기준에 의해 지급되고 있어 평균 임금은 이야기하기 어려움
김명옥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 생활임금 등이 반영된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질려면 이러한 기준들이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임. 단순한 수치로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박창재 (협의체 사무국장)	○ 2014년도에 수립된 부분으로 김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신의 이슈들이 정확하게 구체화 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 제4기 보장계획 수립 시 새로운 비전, 전략, 중점과제등을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㉒ 2018년도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 및 예산(안)

○ 회의결과 : 원안대로 심의

○ 주요내용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display: inline-block;">I</div> 민관협력거버넌스 강화 [Gover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점검·평가 - 제4기(2019~2022)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 대표·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임원 회의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display: inline-block;">II</div> 시민참여 활성화 [Citiz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지원 - 특화사업 컨설팅, 핵심리더교육, 워크숍 등 ○ Community Network 지원 - 홍보지원, 성과보고대회 ○ 지역복지정책 공명(共鳴) 휴먼복지포럼
<div style="background-color: #00838f; color: white;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display: inline-block;">III</div> 협의체 역량강화 [Empower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사업 '지역복지 The core Training'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평가- 경영평가, 자체평가 ○ 조직강화 - 워크숍, 성과보고대회 ○ 국외 선진복지국가 벤치마킹 	<div style="background-color: #008000; color: white;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display: inline-block;">IV</div> 지역사회 연대강화 [Solida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복지정책 조사연구 - 지역사회보장조사, 종사자처우개선연구 등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도 운영 ○ 지역사회보장 유관 기관 단체 간담회 ○ 홍보사업 - 뉴스레터, 홈페이지 운영 등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관	항	2018예산 (A)	2017예산 (B)	증 감 (A-B)	관	항	2018예산 (A)	2017예산 (B)	증 감 (A-B)
총 계		573,681	836,137	△262,456	총 계		573,681	836,137	△262,456
보조금 수입	소계	558,022	816,188	△258,166	사무비	소계	325,022	307,068	17,954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325,022	307,068	17,954		인건비	269,464	252,759	16,705
	사회복지 사업보조	179,000	119,500	59,500		업무 추진비	18,000	16,700	1,300
	기타 사업보조	54,000	376,620	△322,620		운영비	37,558	37,609	△51
	민간자본 사업보조	0	13,000	△13,000		재산 조성비	0	13,000	△13,000
자부담	자부담	3,245	0	3,245	사업비	소계	248,659	516,069	△267,410
이월금	이월금	12,414	19,949	△7,535		일반 사업비	182,245	119,500	62,745
						기타 사업비	66,414	396,569	△330,155

○ 논의내용 :

이 름	내 용
이귀선 (대표협의체 위원장)	○ 사무국에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설명해 달라
박창재 (사무국장)	○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으나 모금회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모금회 보조예산을 감안할 경우 증가된 부분임. 2018년도 8천여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4기 계획 수립 및 욕구,자원조사 관련 예산이 증가되었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자체수립하는 시군이 많지 않고 대부분 용역을 맡기는 곳이 많은데 그럴 경우 더 많이 지출되고 있으며 직접수행하면서 필요한 인력이나 연구진은 대표협의체 민소영 교수님 공동연구 이경아 교수님, 하경희 교수님들이 참여해 주고 있어 예산을 절감하여 진행하고 있음.
박은순 (경기여성네트워크 운영위원)	○ 연구용역 관련해서 예산 절감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제대로 써야 하는 부분이 있음. 수원시의 경우 직접 협의체 위원들이 보장계획을 수립하는 전국의 독보적인 양상을 보이는 상황인데 4년전에 비해 연구진들의 희생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됨. 연구 용역은 연구 용역대로의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진행해야 향후 개선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할수 있을 것임. 이러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함. ○ 결과보고서나 4년 계획 수립 이후 당해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것은 평가한 결과보고서인데 그러한 진행과정을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니 하나 건의하는 것은 계획 수립하는 이시기 만큼은 대표협의체를 대상으로 보장계획에 대한 알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위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가능할 것임.

이 름	내 용
박미숙 (복지허브화추진단 단장)	○ 워크숍이 8,9일 진행할 텐데 그때 대표협의체 위원들이 많이 참여하여 보장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일수 있길 바람
이귀선 (대표협의체 위원장)	○ 박은순 위원 정식 안건으로 제안하는 것인가
박은순 (경기여성네트워크 운영위원)	○ 정식 안건으로 제안하는 바임
박창재 (사무국장)	○ 대표협의체 회의가 1년에 4번인데 2차 대표협의체 회의는 5월말에 있을텐데 그때는 이미 보장계획 초안이 나오는 시점이라 크게 의미가 있을텐데 3월에 별도 교육(공청회)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 아직 보장계획 수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복지부와 연동하여 진행하다 보니 연기됨. 보장계획은 협의체 전체 위원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수립될 수 없는 부분으로 공청회나 시민대상 교육 등 일정을 잡아 추진하겠음.
이귀선 (대표협의체 위원장)	○ 박은순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대표협의체가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오터를 해달라는 것으로 들었음. 조찬회의 후 참여 가능한 사람들 만이라도 간단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 연구용역의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용역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됨. 내부 위원들이 수립하는 것은 당연히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된 예산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김은수 (수원시의회 의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위해 열심히 하겠음
이귀선 (대표협의체 위원장)	○ 다음 회의에서 추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겠는가. 그냥 넘어가면 사장이 될 수 있음.
박미숙 (복지허브화추진단 단장)	○ 경기도와 함께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내려오는 2500이 추가로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함.
이귀선 (대표협의체 위원장)	○ 도 추가 부분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면 넘기고 아니면 정식안건으로 넣는 것으로 넣겠음
김명옥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 추가 배정되면 걱정하겠음
박은순 (경기여성네트워크 운영위원)	○ 도에서 배정된건 확실한 것인지. 그 간 무산되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임. 도에서 지원이 된다면 바람직할 것임.
윤학수 (팔달노인복지관 관장)	○ 정기회의가 년4회밖에 없기 때문에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에도 협의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수시로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임. 특히 올해 보장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내용들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바쁘게 회의가 없는 기간에 조찬모임을 하는 이유도 나오는 위원들에게라도 계속적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함. 메일이나 SNS를 통해서라도 계속 공유해 줘야 할 것이고 2차 회의 이전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알림과 강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들이 주는 의견들이 수시로 반영될 수만 있더라면 차기 회의의 안건으로 반영되고 조율될 수 있도록 신경써 줄 것을 요청함.

③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감사 선임 운영세칙 개정(안)

○ 회의결과 : 원안대로 의결

○ 주요내용

• 개정배경

- 2017년도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서, 감사 담당자가 없는 기관의 경우 일상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

• 개정방안 : 제3장 제18조(사업계획 및 예·결산) 개정

변경 전	변경 후
<p>제18조(사업계획 및 예·결산) (중간생략)</p> <p>③ 예산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결과에 대하여 대표협의체 및 수원시에 결산 보고한다.</p> <p>④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p>	<p>제18조(사업계획 및 예·결산) (중간생략)</p> <p>③ 예산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며, <u>집행 내용에 대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결산과 더불어 대표협의체 및 수원시에 보고한다.</u></p> <p>④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p>

○ 논의내용 :

이 름	내 용
양만호 (성공회 나눔의 집 원장사제)	○ 외부에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
박미숙 (복지허브화추진단 단장)	○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할 예정임
양만호 (성공회 나눔의 집 원장사제)	○ 대략적으로도 나온 부분이 없나
박창재 (사무국장)	○ 회계감사의 경우 예산대비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30~50만원으로 예상함.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운영비에 여유가 있으면 대표협의체에 조정하여 상정할 예정임.

II. 보고사항

① 2017년 협의체 운영 실적

○ 의견 없음

② 2017년 협의체 세입·세출 결산

○ 의견 없음

③ 2018년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의견 없음

④ 2017년 우수 활동 실무분과 선정 결과

○ 의견 없음

수 2018년 우수 활동 실무분과 선정 기준(안)

○ 의견 없음

⑥ 2018년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보고

○ 의견 없음

⑦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의견 없음

⑧ 위원변동사항

○ 대표협의체 : 2명(인사발령 등)

○ 실무협의체 : 5명(인사발령 및 신규분과장 선출 등)

○ 실무분과 : 위촉 17명, 해촉 22명(기관 인사이동, 신규위원 추천 등)

참고자료

- 1) 관련사진
- 2) 회의록
- 3) 심의결과서
- 4)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부서 참석부

[참고자료 1] 관련사진

2018년 제1차 대표협의체회의(2018.2.27.)

